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

(서초구 중소상공인 특별보증 대출 지원)

의안 번호	35

제출연월일 : 2026. 9. 22.

제 출 자 : 서초구청장

1. 제안이유

○ **지방재정법 제18조**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'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'라는 규정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○ **의결 요청 사항 : 『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』**

2. 주요내용

○ **출연대상** : 서울신용보증재단

○ **출연내용** : 10억원

- 「2027년 서초구 중소상공인 특별보증 대출 지원」 운영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보증재원 지원

○ **출연근거**

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(기본재산)
- 「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기본재산의 조성)
-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6조(특별보증 지원)

○ **출연의 필요성**

- 고금리 등 경기변화에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상공인의 경영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특별신용보증사업 재원 조성
-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심사기준을 완화한 특별보증으로 금전채무 보증하여 담보 능력 및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게 정책 수혜 효과

○ 연도별 출연금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2011~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금액	11,400	1,500	2,900	2,000	2,000	1,000	1,000	1,000

3. 참고사항

○ 특별신용보증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2027년 서초구 중소상공인 특별보증 대출 지원
- 보증금액 : 100억원(출연금의 10배수)

※ 서초구 출연금 10억원의 10배수의 규모로 특별보증 사업 운영

- 보증대상 : 서초구 관내 중소기업·소상공인
- 보증한도 : 업체당 최대 5천만원(기보증 포함 1억원 이내)
- 대출금리 : CD(91일)금리 + *0.1% 이내(*정책자금별 상이)

※ CD(91일)금리 : 3개월 변동금리
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정책자금별 상환방법 적용)
- 보증비율 : 신규보증 100%, 추가보증 95%
- 보 증 료 : 신규보증 연 0.8%, 추가보증 연 1.0%
- 대출은행 : 협약은행 지정 지점(총 15개 지점)

* '26년도 기준 협약은행 : 신한, 하나, 국민, 우리, 새마을금고, 카카오뱅크

○ 관련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(기본재산)
- 「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기본재산의 조성)
-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6조(특별보증 지원)

관 련 법 령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③ **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** <개정 2014. 5. 28.>

□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제7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3. 기업의 출연금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
□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4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 출연금
2. 금융기관의 출연금
3. 기업의 출연금
4. **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**
5.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

□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제6조(특별보증 지원)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② **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에 출연**할 수 있고,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6. 22.>